#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6

발의연월일: 2020. 6. 26.

발 의 자:신영대·서삼석·김철민

김윤덕 • 한병도 • 유정주

인재근 · 이장섭 · 황 희

신정훈 · 김성주 · 임호선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북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·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음.

하지만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어 기존 인프라 활용이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정작, 이 법에 따른 시책 추진에서는 우선하여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왔음.

또한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지역, 농산어촌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 하고 있으나 시책 추진 시 우선적 고려 규정은 없는 실정임.

이에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,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지역, 농산어촌, 산업위기대 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 제7호, 제3조제2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지역, 농산어촌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"특수상황지역"이란 남북의	7
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·사회	
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	
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	
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	
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	
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지역을 말한다.	<u>.</u>
가.·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다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
	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	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
	<u>지역</u>
<u>다.</u>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	<u>라.</u> (현행 다목과 같음)
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	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지역	
8. ~ 11. (생 략)	8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

책무) (생 략)	책무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
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
	추진함에 있어 제2조에 따른
	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지역,
	<u>농산어촌 및 산업위기대응특별</u>
	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
	한다.